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소형차 수입단계 소비세 조정에 관한 통지**  재관세[2016]63호  해관총서(관세청):  합리적 소비를 이끌고, 수입분배를 조정하며, 에너지절약∙오염물 배출감소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소형차 수입단계 소비세를 조정한다. 이에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.  중국 해외공관(대사관, 영사관) 근무인원, 외국주중기구 및 인원, 비거주자 상주인원, 정부간 협의규정 등 자가용도로 과세(소비세) 수입하고 동시에 세금완납가액이 130만 위안 및 그 이상인 초호화 소형차의 소비세는 생산(수입)단계 세율과 소매단계 세율(10%)에 근거하여 총액을 더해 계산하고, 해관이 대리 징수한다. 구체적인 세목은 첨부를 참조한다.  본 통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집행한다.  첨부: 소형자동차 수입단계 소비세 세목세율표  <http://gss.mof.gov.cn/zhengwuxinxi/zhengcefabu/201611/P020161130627010212756.pdf>  재정부  국가세무총국  2016년11월30일 |  | **关于调整小汽车进口环节消费税的通知**  财关税〔2016〕63号  海关总署：  　　为了引导合理消费，调节收入分配，促进节能减排，经国务院批准，对小汽车进口环节消费税进行调整。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：  　　对我国驻外使领馆工作人员、外国驻华机构及人员、非居民常住人员、政府间协议规定等应税（消费税）进口自用，且完税价格130万元及以上的超豪华小汽车消费税，按照生产（进口）环节税率和零售环节税率（10%）加总计算，由海关代征。具体税目见附件。  　　本通知自2016年12月1日起执行。  　　附件：小汽车进口环节消费税税目税率表  <http://gss.mof.gov.cn/zhengwuxinxi/zhengcefabu/201611/P020161130627010212756.pdf>  财政部  国家税务总局  2016年11月30日 |